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882
----------	-------

발의연월일 : 2025. 11. 4.

발 의 자 : 박수현 · 조인철 · 양부남
이개호 · 박용갑 · 서삼석
임오경 · 한정애 · 김영배
윤종오 · 이정문 · 조계원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혁신도시 외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기존의 혁신도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 많아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수혜에서 제외되고 있음. 현재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는 상황으로, 이전 대상지를 기존 혁신도시에서 배제되었던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목적 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하려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 혁신도시 발전과 배치되지 않으면서도 인구감소지

역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간 형평성과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
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수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
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공기관지방이전”을 “공공기관지방이전과 인구감소지역”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하려는 경우 수도권 이 아닌 인구감소지역(「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한다)으로의 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공공기관지방이전과 인구감소지역----- ----- ----- ----- ----- ----- ----- ----- ----- ----- ----- ----- ----- ----- ----- ----- ----- -----.
제29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 (생략) <u><신설></u>	제29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하려는 경우 수도권이 아닌 인구감소지역(「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② · ③ (생 략)	<u>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 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한다)으로의 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u> 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
--------------------	---